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관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 요금 (단, 산업자원부 도시가스요금연동제시행 지침에 의한 원료비 조정시는 제외)
2.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③ 제2항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도의 경제통상국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도의회 의원, 소비자·근로자·여성대표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분기1회”를 “연1회”로 하고, 제9조 제3항중 “공업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간사는 소비자보호담당사무관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조 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u>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u> <u>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상수도요금</u> 2. <u>하수도사용료</u> 3. <u>공업용수사용료</u> 4. <u>도시가스요금</u> 5. <u>교통요금</u> 6. <u>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u> 7. <u>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u> 8. <u>주차요금</u> 9. <u>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u> <u>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u> <u>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u> <u>용료</u> <p><신설></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u>위원은 충청북도의 보건환경국장,</u></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관리하는 <u>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u> <u>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u> <u>요금 (단, 산업자원부 도시가스요금</u> <u>연동제시행지침에 의한 원료비 조정</u> <u>시는 제외)</u> 2. <u>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u> <u>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u> <u>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u> <u>용료</u> <p>③ <u>제2항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u> <u>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년도</u> <u>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에는</u> <u>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은 도의 경제통상국장과 물가와</u></p>

현행	개정안
<p><u>농정국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청주지방검찰청경제담당검사, 충북지방경찰청수사과장과 물가와</u> <u>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위원</u> <u>장이 위촉한다.</u></p>	<p><u>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도의회 의원, 소비자·근로자·여성대표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u> <u>한다.</u></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 <u>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u></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 <u>연1회</u> -----</p>
<p>제9조 (실무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 <u>공업경제국장</u> ----- ④ <u>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u> <u>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9조 (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경제통상국장</u> ----- ④ <u>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의 규정</u> <u>을 준용한다.</u></p>
<p>제10조(간사) ① (생략) ② (생략) <u><단서 신설></u></p>	<p>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다만, 실무위원회 간사는 소비자</u> <u>보호담당사무관이 된다.</u></p>